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제 회)	

국 군 재 정 관 리 단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 업무가 2022년 1월 1일부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이관예정이나, 국군재정관리단령에는 사망보상금 업무를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부대령 개정이 필요

3. 주요내용

국군재정관리단 업무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업무 중 사망보상금 문구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 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27. ~ 11. 06.)

3)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라목의 급여”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2. 「군인연금법」 제7조 및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u>군인재해보상법</u>」 제7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라목의 <u>급여</u>는 제외한다)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2. 「군인연금법」 제7조 및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u>군인재해보상법</u>」 제7조 제1호는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연 락 처	(02) 748-6579